

의안번호	2214128
의 퇴 인	김선교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7.
추계번호	25B6068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(정원의 조성 등)	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·해제,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, 정원조성계획의 승인, 다른 법률과의 관계, <u>토지 등의 수용 및 사업비 등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6조의2(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), 제6조의3, 제7조, 제8조, 제8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준용함</u> ※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정원의 조성 등에 준용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2(정원의 조성 등)	-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,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- 산림청은 이를 근거로 수목원·식물원의 식물유전자원 수집·증식·보전 및 전시기능을 강화하고,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전문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목원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
 - 지원대상: 15개 시·도 50개 등록수목원(2025년 기준)
 - 보조율: 국비 50%, 지방비 50%

1) 제22조(사업비 등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,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.

[표 1] 수목원 지원 관련 예산 현황(국비): 2021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사업 내용	2021	2022	2023	2024	2025
산림서비스도 우미 (1743-300)	산림복지일 자리사업 (수목원코디 네이터)	수목원 내 전시원 관리, 식물유전자원 조사·관리 및 이용객 관람 지원	696	726	756	690	640

자료: 산림청 제출자료

□ 개정안은 수목원에 대한 사업비 등의 보조 규정을 정원의 조성 등에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조성계획 승인을 받거나 등록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법에 따른 정원은 조성·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
 - 국가정원: 국가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 - 지방정원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 - 민간정원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 운영하는 정원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정원, 지원의 내용·범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